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낙시여가지구 지정 근거 마련 등〉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00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입법 목적에 낙시인의 편의 제고 추가	2
2. 낙시진흥기본계획에 낙시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포함	4
3. 낙시여가지구 지정 근거 마련 등	8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2. 제안일: 2025. 5. 26.
3. 회부일: 2025. 5.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낚시통제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낚시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의2·제44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입법 목적에 낚시인의 편의 제고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이 법의 입법 목적에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 전한 <u>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을 보호하며</u> , 낚시 관련 산업 및 농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 고</u> ----- -----.

나. 검토의견

- ☐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요약한 조문으로,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조항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때 그 해석의 기준이 됨.

개정안은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입법 목적에 추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고,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인 낚시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려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목적규정은 법률의 핵심 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낚시인의 편의 증진”이 이 법의 핵심사항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상 낚시인의 편의와 관련한 규정은 낚시터업의 정의 및 허가 등에 일부 언급되고 있고,¹⁾ 제정 당시에도 낚시 제도의 체계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입법 취지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목적규정에 포함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제2조(정의)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1.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

2.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1. 낚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1. ~ 4. (현행과 같음)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5.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낚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6. (중전의 제5호와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면서, 기본계획에는 낚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43),

개정안은 그 기본계획 안에 낚시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양수산부의 낚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은 낚시에 관한 관리와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낚시를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닌 정책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완화” 등을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낚시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또한, 현행법은 제1조에서 낚시 산업 발전을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43조의 기본계획에서는 낚시 산업 육성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으로 불일치가 있어 왔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립된 각 기본계획에서는 낚시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²⁾ 보다 실질적인 제도

2) 다음과 같이 낚시산업 육성·발전 관련 사항을 포함하였음.

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했을 때,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담는 것만으로는 낚시산업육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임.

현행법상 낚시산업을 육성·진흥하는 규정으로는 제45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도록 규정한 것이 유일한 내용으로 보이고, 시행령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낚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낚시문화 홍보, 수산자원 감소 예방 등을 구체화하고 있음.³⁾

현행법상 기본계획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자체가 구속력 있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

(!) 2013년 12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4~2018]에서는 ① 낚시산업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구축, ② 자원·환경·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③ 명품 낚시공간 구축을 통한 어촌소득 기반 창출, ④ 수출 진흥·관광산업화를 통한 낚시산업 육성 등 4개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2) 2020년 2월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① 낚시 관련 통계 기반 마련, ② 낚시 관련 산업 R&D 지원, ③ 낚시용품 브랜드 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④ 낚시 관리구역(가칭)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음.

(3) 가장 최근(2025.6.)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안)[2025~2029]에서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4대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세부 추진과제로는 낚시 전용선 도입 검토 및 낚시여가 특별구역 지정 등을 포함하였음.

3)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사업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낚시 대상 어종의 개발·관리 및 외래 도입 어종의 이용을 위한 연구 사업
7.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업

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이행수단이나, 예산 또는 제도적 연계 장치 등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낚시여가지구 지정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여가지구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4조의2(낚시여가지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u> <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여가</u>

현행	개정안
<신설>	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여가지구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여가지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낚시여가지구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여가지구를 변경하여 고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낚시여가지구의 지정 신청의 방법·절차 및 지정의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낚시여가지구에 대한 특례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라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낚시여가지구 내의 낚시 도구·시기·대상 및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낚시여가지구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낚시여가지구의 지정권자, 지정 대상 및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환경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낚시수요에 대응하고, 낚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나 기존 어업인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낚시는 어업인과 동일한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어획을 한다는 측면에서 낚시 수요의 확대는 어업인과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낚시여가지구의 지정도 기존 어업구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 제6조⁴⁾에 따라 낙시통제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는바, 낙시통제구역과 낙시여가지구의 지정은 정책적으로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낙시여가지구의 지정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특히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위임 근거는 없으므로,⁵⁾ 개정안과 같이 낙시여가지구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할 경우 낙시여가지구의 관리 주체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은 낙시여가지구 지정 이후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낙시여가지구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그 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낙시환경 조성 및 낙시로 인한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낙시여가지구의 지정에 공감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지역(바닷가 및 공공용수면 등에 위치한 국가유산, 상수원보호구역 및 무역항 등)은 낙시여가지구 지정 대

4) 제6조(낙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낙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⁶⁾

수협중앙회는 낚시여가지구의 도입은 어업인 조업 구역과 겹칠 수 밖에 없어 낚시인과 어업인 간 조업경쟁으로 인한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낚시여가지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임.

- 참고로 동 법률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232호)」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422

6)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제3차 기본계획(안)에서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낚시여가특별구역 등 지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2028년 이후 사업 공모 등을 추진한다는 사업일정을 함께 제시하였음.

참고 1

낙시산업 현황

□ 낙시인구

- 낙시 인구는 '00년에 5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3년 기준 720만 명으로 추정(연평균 증가율 2.4%)

* 1년에 3회 이상 낙시 활동을 한 국민을 낙시 인구로 가정(외국의 경우 1년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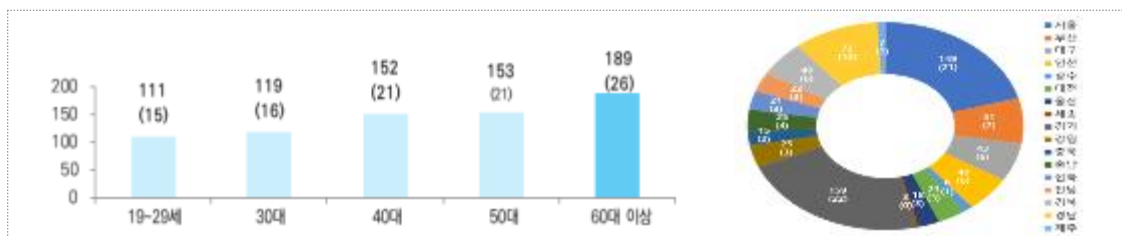
< 우리나라 낙시인구 추이(만 명, %) >



* 모집단 : '23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 기준(중증 환자 수 제외)

- 연령별로 40대 이상이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 비율은 7대3, 지역별로 수도권(서울, 경기)에 다수 분포

< '23년 연령별/지역별 낙시인구 추정(만 명, %) >



□ 낙시터

- '24년 기준 허가·등록 낙시터는 896개소로 경기·충북·충남이 전체의 64.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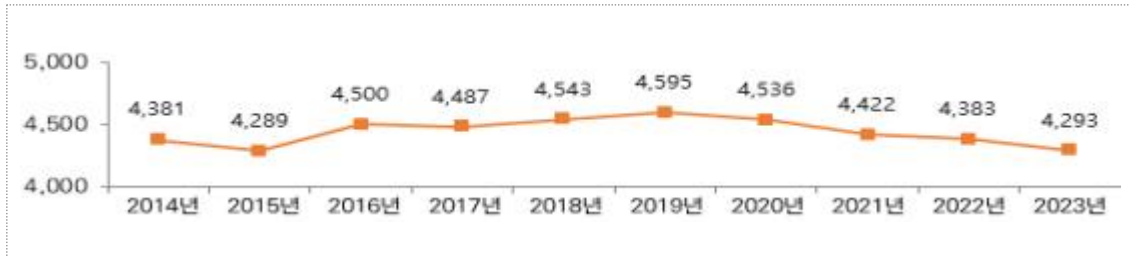
(단위: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7	11	44	3	4	9	3	289	53	118	170	18	38	39	70	3

□ 낚시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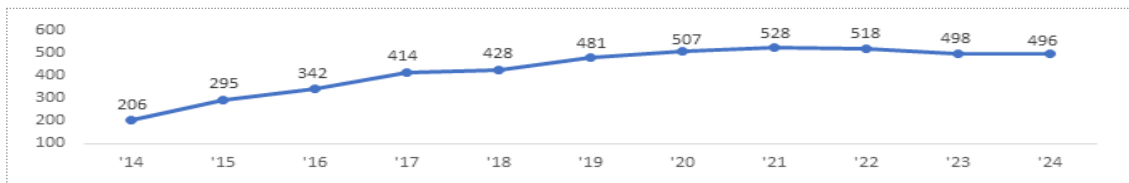
- 낚시어선은 '19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추세이며, '24년 말 기준 3,895척을 기록

< 낚시어선 신고 척수(척) >



- '24년 기준 낚시어선 이용객수는 496만 명임

< 낚시어선 이용객(만 명) >



- '24년 낚시어선 어획량은 총 1.5만톤 수준이며, 상위 5종의 어획량은 9천톤으로 총 어획량의 62%를 차지

구분	2023		2024	
	어획량(톤)	연근해생산량 대비(%)	어획량(톤)	연근해생산량 대비(%)
갈치	6,112	10.1	3,207	7.2
주꾸미	1,729	78.4	1,452	61.1
갯오징어류	1,217	24.9	2,100	31.4
문어류	913	11.0	1,670	16.5
한치류	831	30.9	768	50.2

참고 2

낙시통제구역 지정 현황

지역		개소수	주 지정 사유
시도	시군구		
총계		150	
부산	소계	1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강서구	1	
	기장군	2	
	서구	3	
	수영구	4	
	영도구	1	
	해운대구	2	
인천	소계	4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남동구	1	
	옹진군	3	
강원도	소계	11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강릉	5	
	속초	4	
	양구	1	
	양양	1	
경기도	소계	1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관광객 및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고양시	1	
	시흥시	7	
	안산시	4	
	양주시	1	
경상남도	소계	26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고성군	4	
	남해군	5	
	밀양시	1	
	사천시	2	
	창원시	2	
	통영시	12	
전라남도	소계	52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고흥군	7	
	신안군	16	
	여수시	20	
	완도군	8	
	함평군	1	
전라북도	소계	12	수산자원보호 및 낙시인 안전사고 예방
	군산	12	
충청남도	소계	9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당진시	1	
	서산시	5	
	서천군	2	
	예산군	1	
제주도	소계	10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서귀포시	2	
	제주시	8	

참고 3

낙시터업 허가·등록 현황

(단위: 건)

구분	'19			'20			'21			'22			'23			'24		
	계	허가	등록	계	허가	등록	계	허가	등록	계	허가	등록	계	허가	등록	계	허가	등록
계	943	538	405	934	555	379	959	568	391	942	564	378	894	528	366	896	531	365
서울	27		27	20	-	20	18	0	18	17	0	17	17	0	17	17	-	17
부산	9	4	5	9	4	5	7	2	5	8	3	5	8	3	5	7	2	5
인천	50	26	24	58	26	32	54	27	27	53	26	27	49	20	29	11	6	5
울산	7	2	5	10	2	8	7	2	5	9	2	7	9	2	7	44	20	24
대구	12	6	6	12	6	6	12	6	6	11	5	6	11	6	5	3	-	3
광주	5	-	5	-	-	-	5	0	5	4	0	4	3	0	3	4	1	3
대전	4	-	4	4	-	4	4	1	3	4	1	3	4	1	3	9	2	7
세종	3		3	3	-	3	3	0	3	3	0	3	3	0	3	3	-	3
경기	318	164	154	305	162	143	310	152	158	308	153	155	287	141	146	289	138	151
강원	55	23	32	54	24	30	54	24	30	55	24	31	52	23	29	53	23	30
충북	124	87	37	120	88	32	122	88	34	115	85	30	118	86	32	118	85	33
충남	166	141	25	172	145	27	178	153	25	176	147	29	167	142	25	170	142	28
전북	23	3	20	19	2	17	22	2	20	21	1	20	18	3	15	18	3	15
전남	20	15	5	22	18	4	31	25	6	29	27	2	30	21	9	38	35	3
경북	53	16	37	48	15	33	46	15	31	44	17	27	41	11	30	39	10	29
경남	66	50	16	77	62	15	84	69	15	83	71	12	74	66	8	70	61	9
제주	1	1	-	1	1	-	2	2	0	2	2	0	3	3	0	3	3	-

참고 4

국가보호지역 등의 행위제한 (관계기관 수정의견 관련)

□ 국가보호지역

보호지역	근거법령	금지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울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특정도서	「도서생태계법」 제8조제1항제7호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무역항 (「항만법」 제2조제2호)

-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 서비스선 및 서비스선 등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작업 등이 빈번한 곳으로, 낚시여가지구 지정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선박 통항이나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또한 대부분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여가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